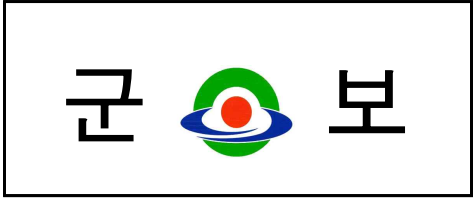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7호 2026. 7. 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71호)

공 고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개모집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97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내성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위 치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812번지 외 6필지
점용면적	영구점용 : 443㎡ 일시점용 : 174㎡
점용목적	고평제2배수장, 제2배수문 설치
사업개요	고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점용기간	영구 : 2026년 7월 6일 ~ 영구 일시 : 2026년 7월 6일 ~ 2028년 12월 31일

예천군 공고 제2026 - 971호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예 천 군 수

□ 모집분야 및 인원 : 00 명 (10명이내)

-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응모자격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다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자격 제외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 기

- 분양가심사위원 : **2년** / 위촉시부터 (2차례 연임가능)

□ 모집기한 : 2026. 8. 16.(일) 18:00까지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 접 수 처 : 예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스캔) 접수 가능
 - e-Mail : seowon4959@korea.kr

- 주 소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충효로 111(예천군청, 2층) 건축과
- 신청서 양식 우리군 홈페이지(www.ycg.kr) :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 ※ 접수 시 응모신청서를 활용하고 경력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확인전화 요

□ 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메일로 제출시 한글파일(hwp파일)로 작성(재직증명서 등 이미지 파일을 한글파일에 편집)하여 제출 바랍니다.

□ 위원선정

-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후 개별통보
-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우선 선정 예정

□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예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에 문의 바람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사진첨부
◇ 인적사항 상세정보							
1.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분야	반드시 기재			
2.직업군	직업군 : 교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기타 등						
3.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4.주택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5.전화번호	휴대폰		주택		직장		
	E-mail주소				팩스		
6.직장현황	직장명				담당업무		
	직급(위)				전문분야 근무경력		
	직장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7.자격증 보유현황 (상위등급 부터 작성)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8.학력현황 (최종학력 부터 작성)	학위취득일	출신학교		학과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9.주요경력 (최근경력 부터 작성)							
10.위원회 활동(최근부 터 작성)	위촉기간(시작~종료)		기관명		위원회명칭		주요기능
11.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등록신청은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 사진은 증명사진을 스캔해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분야는 아래 모집(전문)분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토목, 건축, 주택,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공사 등 관련 분야 기재**

1. 직업군은 교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기타 등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인지 확인한 후 해당 직업군을 기재합니다.
2. 3항(성명)~6항(직장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메일주소는 연락 받을 메일을 기재합니다.
 - 직 급 : 현재 소속된 기관의 직위 기재
 - 대학 등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책임, 선임, 수석, 연구위원으로 기재
 - 공사·공단·투자기관 : 임원(1급), 부장(2급) 등으로 기재
 - 기업체 등 임 직원 :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현 소속 기업체 직위 기재
 - 전문분야 근무경력 : 해당 전문분야 전체(타 기관, 업체 포함) 근무년수 기재
3.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상위등급부터 기재합니다.
4. 학력사항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박사, 석사, 학사로 구분하고 졸업은 졸업, 수료, 재학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경력은 ‘1항’의 지원분야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위주로 기재합니다.
6. 위원회 활동실적은 ‘1항’의 지원분야와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실적을 최근 부터 기재합니다.
7.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 메일로 제출시 작성지란에 서명 날인 후 이미지파일(서명 또는 도장)을 한글파일(hwp파일)로 작성 (이미지파일을 한글파일에 편집)하여 제출 바랍니다.
8.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해당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9. 11항의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증명발급, 사본 등)를 지원서에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분양가심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응모 자격 및 지원자 심사를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예천군은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지원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력·자격 사항 등 지원서(추천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자격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일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단,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력·자격 사항 등 지원서(추천서) 기재사항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자격적정여부 확인	신청접수일로부터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일까지 (단,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정보주체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예 천 군 수 귀 하

예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추천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공분야	주요경력	전화번호	비 고

※ 분양가 심사위원 대상자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